

# 이사회규정

직무코드명	경영
분류코드	CR-A03-15-V0
관리부서	재무팀
제정일	2014.11.01
개정일	2018.03.16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이사회(이하 ‘이사회’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권한)

- (1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- (2)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(의장)

- (1) 정관에 의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
- (2)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직급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### 제6조(감사의 출석 등)

- (1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(2)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7조(종류)

- (1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(2) 정기이사회는 2월, 5월, 8월, 11월의 두번째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

한다.

- (3)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# 제8조(소집권자)

- (1) 이사는 회일의 14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일시 및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을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, 종전 이사회와 동일한 이사회와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개최하는 이사회는 본 항 본문에 불구하고 7일 전에 서면 통지하여 이사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9조(결의방법)

- (1)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단,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. 이 경우 출석이사 전원이 서로의 발언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회의,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서도 회의할 수 있다.
- (2)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(3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0조(위원회 등)

- (1) 상법 및 기타 관련법규상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내조직별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관련 임원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 등)를 두어 심의·결의할 수 있다.
- (2) 위원회의 구성, 결의방법, 부의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관계인의 참석)

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(1) 이사회는 각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그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

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의사록)

- (1)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(2)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(3)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(4)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4조(간사)

- (1) 이사회는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- (2) 간사는 재무총괄임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